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16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○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염소, 산양, 메추리가 사육대상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“염소, 산양, 메추리”를 포함함(안 별표 1)

- 염소, 산양: 300미터 이내 사육제한
- 메추리: 800미터 이내 사육제한

나.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제외되는 소규모 사육두수에 “염소, 산양, 메추리” 추가함(안 제4조)

- 염소, 산양: 5마리 이하일 때
- 메추리: 20마리 이하일 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8조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나. 예산 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의사항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, 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강화함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6. 2. 03. ~ 2. 23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제2항제7호 중 “개”를 “개·사슴·양(염소 등 산양 포함)”으로 “오리”를 “오리·메추리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염소·산양·메추리를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한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가축사육 제한 등)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·젖소·말·돼지·<u>개</u>는 5마리 이하, 닭·<u>오리</u>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</p>	<p>제4조(가축사육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-----<u>개·사슴·양(염소 등 산양 포함)</u>----- <u>오리·메추리</u>----- -----</p>

[별표 1]

가축사육 제한구역(제3조 관련)

구분	전부제한구역	일부제한구역
대상지역	<p>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</p> <p>○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</p> <p>○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</p> <p>○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</p>	<p>○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·말: 200미터 이내 - 젓소·사슴·양(염소 등 산양 포함): 300미터 이내 - 돼지·개·닭·오리·<u>메추리</u>: 800미터 이내

※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

1. “가축사육시설” 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.
 -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미만 시설 포함
2. “직선거리”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.
3. “대지”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.